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 63 2015. 10
www.nypi.re.kr

발행일_ 2015. 10. 30 **발행인_** 노 혁
발행처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제작_** 계문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이유진 | 선임연구위원 eugene@nypi.re.kr

요 약

-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해 제안하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이나 갈등해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1차조사 : 2014. 8. 20 - 9. 5, 전문가 28명 참가
  2차조사 : 2014. 9. 25 - 10. 8, 전문가 26명 참가
  -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에 관한 의견
  -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델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제안
  -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제안
  -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제안
  -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안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현행 관련제도에 관한 의견

–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또래조정(61.5%), 화해권고(60.0%), 형사조정(41.7%), 분쟁조정(34.6%),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 · 학교 및 사회 봉사 · 특별교육(26.9%)의 순으로 회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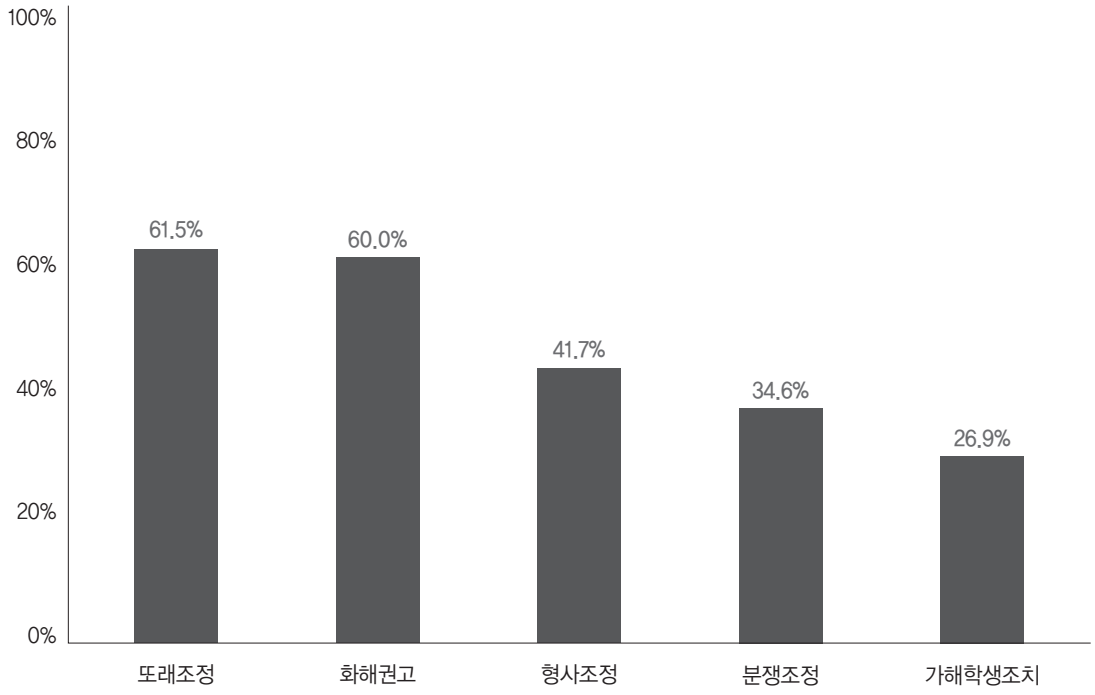

그림 I 현행 제도가 회복적인지 여부

– 회복적 또래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조정자 및 지도교사의 역량 등 관계자 모두의 역동성이 중요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또래조정 결과를 토대로 사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의 절차적인 합리성보다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고,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며, 특히 가해학생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동기부여가 되려면 조정결과가 조치결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인 형사조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이미 당사자 간에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에서는 회복적 형사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경우에는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 중에서는 화해권고가 가장 회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경찰단계, 소년형사사건, 당사자 신청사건 등 여러 가지 절차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화해권고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해학생의 가정환경 등 전제조건의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행 학교 내 대응체계 중에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음. 모든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적 처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학교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구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 조치결정과 연동하여 불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의견

–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에 개입하여 회복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굳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는 확장론(66.7%)이 순수론(33.3%)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음.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상담, 코칭, 중재, 조정,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54.2%),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25%) 등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79.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와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됨.

–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라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회복적 정의의 대체 용어를 알아본 결과, 회복적 갈등해결(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우관계회복(12.0%), 관계회복 절차(10.7%), 회복적생활교육(10.7%) 등에 관한 의견이 많았음.

–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시설 인프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인력 확충방안은 갈등해결 등 조정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예산수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한편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을 거점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등 소규모 단위의 지역 중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목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상처,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 대상별로 가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반성과 사과 및 원인치료’이고, 피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용서와 치유 및 피해회복’이며, 이들을 둘러싼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목표는 ‘안전한 환경조성’임. 이러한 대상별 목표를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모델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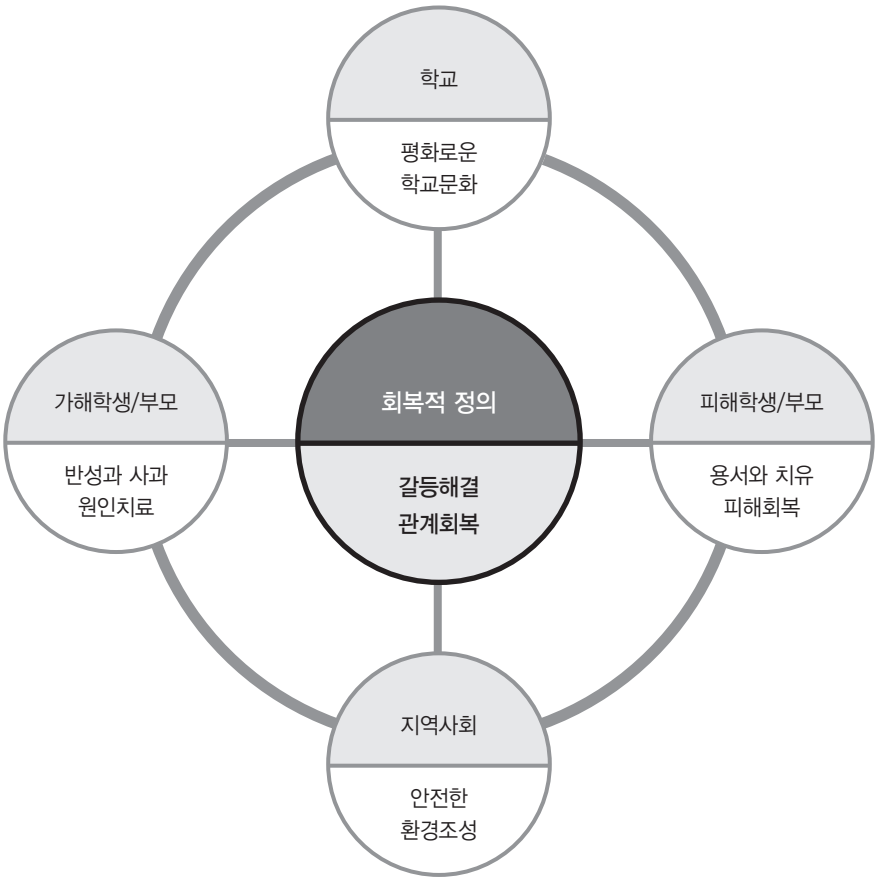

그림 2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대상과 목표

– 모든 학교폭력 처리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 예방단계에서부터 학교에서의 처리단계, 사법절차 및 교정 단계까지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 모든 기관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점과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복적 지원을 담당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회복적 지원기구인 지역중심 '갈등중재센터'가 필요함.

▶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 회복적 정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내면화되어 생활습관으로 굳어짐으로써 평소에 평화적인 갈등해결이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기별 1회 이상' 규정은 최소기준으로 보아야함. 따라서 적어도 한 달에 1회 또는 학급회의 때마다 짧은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회복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학급 단위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함.

– 지난 3년간 또래조정 시범실시로 인해 조정과 화해의 가치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가 회복적인 절차로써 실효성을 가지려면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담임종결사안'을 확대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피해학생의 화해와 관계회복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조치인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 중에 중간 삭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는 관계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회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비록 양당사자의 화해를 위한 제도이더라도 진정한 화해의 관건은 피해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생활지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져 회복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초기개입 기관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년법을 개정하여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훈방할 수 있도록 '회복적 훈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경찰 단계의 회복적 훈방과 같은 맥락에서 '회복적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제49조3 조건부 기소유예 규정에 '화해조정 참여'와 같은 회복적 조건을 신설하거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회복적 조정자로 양성하거나, 선도 ·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의 운영을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회복적 상담이나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법 상의 화해권고에 따라 법원에서 화해가 되어도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져 화해를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에 장애가 됨. 따라서 화해가 되면 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결정을 면제하고, 조치결정이 집행된 이후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화해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장기간의 관리 · 지원이 필요함.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 회복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를 위해서는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사법형 그룹홈'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산하에 확충해 대안가정을 마련해주어야 함.

–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가해학생에 대해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써의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 개입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알게 됨으로써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반성은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지원체계 구축방안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복적 지원을 담당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회복적 지원기구인 지역중심 '갈등중재센터'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하는 기구이고 학부모와 학생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중립성에 한계가 있어 분쟁조정까지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둘째, 학교폭력에서 화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규명이 안 되기 때문이므로 사실규명과 함께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재기관이 필요함. 셋째, 학교절차와 사법절차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호 정보공유나 결정사항의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와 사법기관을 연계해줄 허브기관이 필요함.

–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시 갈등중재센터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조문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4항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학교폭력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년법에도 경찰과 검사, 판사가 화해를 위해 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폭력 회복적 지원기구 설립법'의 제정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회복적 정의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정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양성한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조정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특히 형사조정이나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회복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회복적 정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의 진정한 철학적 목적과 이론적 내용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내에 회복적 정의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주체,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복적 정의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기대효과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상처, 깨어진 관계의 회복
▶ 가해학생 및 부모의 반성과 사과 및 원인치료
▶ 피해학생 및 부모의 용서와 치유 및 피해회복
▶ 주변학생 및 교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구축
▶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
▶ 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가해학생 자신의 회복에 기여
▶ 회복적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공동체 구축 등으로 소년보호의 효과성 제고
▶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확대 효과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